

관용의 원칙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of Principles on Tolerance)

1995년 11월 16일
제 28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

관용의 원칙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of Principles on Tolerance)

유엔 헌장에 명기된 '전쟁의 참화로부터 다음 세대를 구하고 . . . 기본적 인권, 인간 존엄과 가치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 . .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용을 실천하고 좋은 이웃으로서 서로 평화롭게 함께 살기로 굳게 결심한 우리 유엔의 국민들은'이라는 진술에 *유념하고*,

평화란 그것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인류의 지적, 도덕적 연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1945년 11월 16일에 채택된 유네스코 헌장 전문의 진술을 *상기하며*,

또한 세계인권선언이 '모든 인간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제 18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제 19조)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 교육은 모든 민족과 인종 또는 종교 집단 사이에서 이해, 관용, 우애를 증진시켜야 한다 (제 26조)'고 확인한 바를 *상기하고*,

다음의 관련 국제협약에 *주목하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국제협약

학살 범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 관련 지역 약정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잔학한 비인간적, 모욕적 대우 또는 처벌 금지 협약

종교 또는 신념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불관용 철폐에 관한 선언

인종 또는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민에 속하는 자의 권리에 관한 선언

국제 테러리즘의 퇴치에 관한 선언

세계인권회의의 비엔나 선언과 행동 계획

세계사회개발 정상회의의 코펜하겐 선언과 행동 계획

인종과 인종적 편견에 관한 유네스코 선언

유네스코 교육상 차별금지 협약 및 권고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에 대한 투쟁사업의 제 3차 10개년과 세계인권교육 10개년, 그리고 세계원주민 10개년 사업 등의 목적을 마음에 *새기며*,

제 27차 유네스코 총회 결의안 5.14에 따른 유엔 관용의 해의 틀 안에서 조직된 지역회의들의 권고들뿐만 아니라, 유엔 관용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회원국이 조직한 각종 회의와 모임의 결론과 권고를 *고려하고*,

현재 민족 및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민, 난민, 이민 노동자, 이주민과 사회 내부의 취약 집단에 대한 불관용, 폭력, 테러리즘, 외국인 혐오증, 공격적 민족주의,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배척, 소외와 차별뿐만 아니라,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개인에 대한 폭력과 위협 - 이 모든 것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발전에 대한 장애가 된다 - 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경각하며,

인종, 성, 언어, 출신민족, 종교 또는 신체의 불구에 관계없이 모든 이를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발전시키고 장려하며, 불관용과 싸우는 것이 회원국의 책임임을 강조하면서,

이 관용의 원칙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고 엄숙히 선포한다.

제 1조 관용의 의미

관용은 소중한 원칙일 뿐만 아니라 평화와 모든 국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향상을 위한 필요조건이기에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관용을 신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면서,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1 관용이란 우리 세계의 문화와 우리의 표현 형태, 인간 존재의 방식 등의 풍부한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며, 수용이며, 이해이다. 그것은 지식, 개방성, 커뮤니케이션, 사상과 양심과 신념의 자유에 의해 증진된다. 관용은 차이 속의 조화이다. 그것은 도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법적 필요조건이다.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덕목인 관용은 전쟁의 문화를 평화의 문화로 바꾸는 데 이바지한다.

1.2 관용은 양보나 겸손이나 은혜가 아니다. 관용은 무엇보다도 다른 이의 보편적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정하는 적극적 태도이다. 관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기본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수 없다. 관용은 개인, 집단, 국가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

1.3 관용은 인권, 다원주의 (문화적 다원주의를 포함), 민주주의, 법의 지배를 지지하는 책임감이다. 그것은 독단주의와 절대주의에 대한 거부를 뜻하며 각종 국제적 인권문서들이 정해 놓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다.

1.4 인권의 존중과 일치하는 관용의 실천은 사회의 불의를 용인한다든지 자기의 확신을 포기 또는 약화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자유로이 자기 자신의 확신을 고수하고 다른 사람이 그들의 확신을 고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원래 용모, 상황, 언사, 행위, 가치 등에서 다양한 인류가 평화롭게 지금 그대로 살아갈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을 뜻한다. 그것은 또한 한 사람의 견해가 다른 사람에게 강요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제 2조 국가 수준

2.1 국가 수준에서의 관용은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입법, 법 시행, 사법 및 행정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또한 경제적, 사회적 기회가 어떠한 차별도 없이 각 사람에게 골고루 주어져야 함을 요구한다. 배제와 소외는 좌절과 적대와 광기를 유발할 수 있다.

2.2 더욱 관용적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국가는 기존의 국제인권협약들을

비준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사회 내부의 모든 집단과 개인에 대한 대우와 기회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법률을 기초해야 한다.

2.3 개인, 공동체, 국가가 인류 가족의 다문화적 성격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은 국제적인 조화를 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관용없이 평화가 있을 수 없으며, 평화없이 발전이나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다.

2.4 불관용은 취약 집단에 대한 소외와 사회적, 정치적 참여의 배제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폭력과 차별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인종과 인종적 편견에 관한 선언'에서 확인하였듯이 "모든 개인과 집단은 다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 1조2항)

제 3조 사회적 차원

3.1 현대 세계에서 관용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필수적이다. 현대는 경제의 세계화와 급속히 증대하는 유동성, 커뮤니케이션, 통합, 상호의존, 대규모 이민과 인구 이동, 도시화와 사회양식의 변화 등이 눈에 띄는 시대이다. 세계 곳곳이 다양성의 특징을 띠고 있는 만큼, 점증하는 불관용과 불화가 잠재적으로 곳곳을 위협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지구적 위협인 것이다.

3.2 관용은 개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의 차원에서 필요하다. 관용의 증진과 개방적 태도의 형성, 상호 귀기울임과 연대가 학교와 대학에서 일어나야 하고, 비공식교육을 통하여 가정과 일터에서 행해져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매체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대화와 논의를 용이하게 하고, 관용의 가치를 전파하며, 불관용적인 집단과 이데올로기의 등장에 대한 무관심의 위험을 부각시키는 데 있어서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3.3 '인종과 인종적 편견에 관한 유네스코 선언'에서 단언하였듯이 개인과 집단의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어느 곳에서라도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특권이 없는 취약집단에 대해, 특히 주거, 고용, 보건과 관련하여 법의 보호와 시행중인 사회적 조치들을 제공하고, 그들의 문화와 가치의 참다움을 존중하고, 특히 교육을 통하여 그들의 사회적, 직업적 향상과 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4 이러한 전 지구적 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조정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원인과 효율적인 대책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정책 결정과 기준 설정 활동을 지원하는 연구와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적절한 과학적 연구와 네트워크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 4조 교육

4.1 교육은 불관용을 예방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관용 교육의 첫 단계는 인간들이 공유하고 있는 권리와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며, 그래서 그러한 권리와 자유가 존중받도록 하고 다른 이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의지도 키우는 것이다.

4.2 관용을 위한 교육은 절박한 지상과제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불관용의 근원 - 폭력과 배제의 주요 뿌리 - 을 다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용교육의 방법을 신장시키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교육 정책과 사업은 개인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인종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언어적 집단과 민족 사이에서 이해와 연대와 관용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4.3 관용교육은 타인에 대한 공포와 배척을 유발하는 영향력을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청소년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판단, 비판적인 사고, 윤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야 한다.

4.4 우리는 관용과 인권과 비폭력을 위한 사회과학연구 사업과 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이것은 다른 문화에 개방적이고, 자유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알고, 인간의 존엄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갈등을 예방하거나 그것을 비폭력적 수단으로 해결할 줄 아는, 배려깊고 책임있는 시민을 교육하기 위해, 교사 훈련, 교과과정, 교재와 학과 내용, 새로운 교육공학을 포함하는 그밖의 교육 자료 등을 개선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을 뜻한다.

제 5조 행동 공약

5.1 우리는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사업과 기관들을 통하여 관용과 비폭력 정신을 높이는데 전념할 것을 천명한다.

제 6조 국제 관용의 날

6.1 대중에게 호소하고, 불관용의 위험을 강조하고, 관용의 증진과 교육을 지지하는 새로운 공약과 행동에 호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년 11월 16일을 국제 관용의 날로 엄숙히 선포한다.